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허홍석 의원 발의】



2019.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82호로 2019년 11월 13일 허홍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 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상품권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집행

다. 입법예고 (2019. 11. 14. ~ 11. 18.)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영등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및 시스템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영등포구 일원으로 하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에 대해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일환으로 영등포구 지역화폐인 “영등포사랑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가맹점 확보 및 인프라 조성 등 지역화폐에 대한 자립적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지역 화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화폐 자체의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의제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 고 자 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 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6조(사업 및 지원), 제7조(운영 대행사의 선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조례안 제5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및 제6조(사업 및 지원)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 비용, 제6조(사업 및 지원)의 할인율 보전금 지원, 제7조(운영대행사의 선정)의 운영 대행 비용

나. 전제

-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도입 계획('19.09.11)및 참조하여 연간 영등포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이용 활성화 비용, 할인율 보전금 비용, 운영대행 비용을 전제
 - 발행규모는 연 200억 원 수준으로 발행
 - 영등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비용은 연 26,300천원 수준으로 책정
 - 발행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 보전금은 7%(서울시 5% 지원)
 - 운영대행 비용은 발행액의 1.65%(서울시 전액 지원)
- ※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자료('19.09.23 및 10.29)등을 참조하여 시비 보조금 반영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2020~2024년으로 함(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131,500천원(연평균 426,3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세입	할인율보전금 (제6조)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운영대행비용 (제7조)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소계(a)	1,330,000	1,330,000	1,330,000	1,330,000	1,330,000	6,650,000
세출	상품권 이용 활성화 비용 (제5조, 제6조)	26,300	26,300	26,300	26,300	26,300	131,500
	할인율보전금 (제6조)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7,000,000
	운영대행비용 (제7조)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1,650,000
	소계(b)	1,756,300	1,756,300	1,756,300	1,756,300	1,756,300	8,781,500
□ 총 비용(b-a)		426,300	426,300	426,300	426,300	426,300	2,131,5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상품권의이용 활성화 조치), 제6조(사업 및 지원), 제7조(운영 대행사의 선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상품권 이용 활성화 비용: 연간비용 26,300천원×5년
= 131,500천원

※ 상품권 이용 활성화 비용: 홍보비15,000천원+행사비9,300천원
+업무추진비2,000천원=26,300천원

- 할인율 보전금: 연간 발행액 200억
 \times [할인율 보전금7%-할인율 보전금 5%(시비)]
 \times 5년 = 20억

- 운영대행 비용: 연간 발행액 200억 \times 운영대행 비용1.65% \times 5년
 = 1,650,000천원(전액 시비)
- ※ 운영대행 비용 : 200억 \times [결제사판매수수료1.1%(부가가치세포함)
 + 운영대행수수료0.55%(부가가치세 포함)]
 = 200억 \times 1.65%(전액 시비로 자치구 비용 없음)